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의 건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21-----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4. 21
다. 상정일자 : 제1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2004. 5. 4),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조동규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심속의 푸른 녹지공원인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 기여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물론 안락한 시민편의 쉼터인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함.

○ 취득대상 재산목록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지번	토지	건물			소요예산 (감정가추정)
		면적(m ²)	층별	구조	면적(m ²)	
쌈지공원 조성	괴정동 903-1	148 (44.8평)	지상1층	연와조	64.46	291,003
	괴정동 904	114 (34.5평)	지상2층	벽돌스라브	57.95	103,454
	괴정동 905	116 (35.1평)	지상1층	목조	36.36	105,269
			지상1층	블럭조	75.44	
	괴정동 932	1148중319 (96.5평)	지상1층	목조	124.63	627,230
			지상1층	목조	23.14	
			지상1층	목조	46.94	
	괴정동 932-2	33 (10평)				64,885
	계	730 (221평)			428.92 (129평)	1,191,841

3.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변경 승인안은 2003. 10. 13 임시회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그후 여건변화에 의거 2004. 2. 27 제 117회 임시회시 1차 변경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또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안서에서 보고된 내용임
- 본 쌈지공원 조성계획은 2003. 3 보호수 보호방안으로 구청장께 보고된 내용으로

우리구 상징목 임과 동시 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호수의 가치가 인접주택의 옥상 및 지붕위로 뻗어 있어 주민의 생활권에 침해가 되어 그간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바, 보호수 보존도 되고, 주민 민원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피해 주민의 부지를 매수하여 주변을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5필지중 2필지는 지주의 반대로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3필지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3필지만으로도 공원조성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 2004 부산시의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부족분은 년말에 AG대회 잉여금으로 확보 해 주겠다는 해당부서의 구두약속도 있었다하니 나머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지원 함과 동시에 변경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 다만, 이기회에 집고넘어가야 할 사항은 위에서 보고된바 있습니다만, 본계획이 2003. 3월에 수립 보고된 사항이며 소요예산이 2,846백만원으로 측정되었고 2003. 8. 13자로 부산시에 제출된 공문에 의하면 해당지역 사업비로 8억원 지원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임기응변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임.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